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3 선고 2024나200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3 선고 2024나2009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2 선고 2022가단5235163 판결

## 전문

**원고, 피항소인A**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유태훈

**피고, 항소인B**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현

**변론 종결** 2024. 9. 25.

**판결 선고** 2024. 10. 23.

**제1심판결**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2. 선고 2022가단5235163 판결

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2. 1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1. 5. 31. 체결된 매매계약을 63,173,1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3,173,1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·강조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윤재남

판사선의중

판사정덕수

별지